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1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선교·백종헌

김소희 • 박덕흠 • 최수진

장동혁 · 김상훈 · 주호영

김은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형법」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 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,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,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·제2항, 제15조, 제15 조의2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) 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-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제4조, 제6조,"를 "제4조, 제4조의2, 제6조,"로, "제4조, 제6조 또는"을 "제4조, 제4조의2, 제6조 또는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제3조부터 제7조까지,"를 "제3조 및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7조까지,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4조, 제5조 또는"을 "제4조, 제4조의2, 제5조 또는"으로, "제4조 또는 제5조"를 "제4조, 제4조의2 또는 제5조"로 한다.

제15조 중 "제3조부터 제9조까지"를 "제3조 및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 부터 제9조까지"로 한다.

제15조의2 중 "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"를 "제3조 및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재 정 안 제4조의2(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) 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 약류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
	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 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.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.
제8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① 제 3조제1항, <u>제4조, 제6조,</u> 제7조 또는 제15조(제3조제1항, <u>제4</u> <u>조, 제6조 또는</u> 제7조의 미수범 으로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	제8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① <u>제4조, 제4조의2, 제6</u> 조, <u>제</u>

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 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- 제9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 ① 제 3조부터 제7조까지, 제15조(제3 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「형법」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 2(유사강간) 및 제298조(강제추행)부터 제300조(미수범)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4조, 제5조 또는 제15조 (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 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③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 ① <u>제</u>
3조 및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
<u>부터 제7조까지,</u>
· ② <u>제4조, 제4조의2, 제5조 또</u>
는 <u>제4조, 제4조의2 또</u>
는 제5조
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미수범) <u>제3조 및 제4조,</u>
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9조까지
제15조의2(예비, 음모) <u>제3조 및</u>

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 <u>7조까지의</u>-----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 <u>제4조, 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</u>